

[별지 제7호서식]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유권 현 황 ※ 재개발 사업 대상	토지	소재지 (공유여부)			면적(㎡)
		(계필지)			
		()			
	건축물	()			
		소재지 (허가유무)			동수
		()			
		()			
	지상권 (건축물 외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소유권 현 황 ※ 재건축 사업 대상	소유권 위치 (주소)				
	등기상 건축물 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 (면적)	㎡	
동 의 내 용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습니다.				
	1. 아래의 동의여부 표기 시 각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 ①과 ②는 둘 중에 한 곳에만 동의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의제사항				자필로 동의 기재 <①, ② 중 한 곳만 표기>
	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서명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의제됨			동의
	② 조합직접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조합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됨 ※구역지정 전에 조합직접설립에 대해 과반수 동의 미충족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여 추진하거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에 과반수 동의가 확인(충족)될 경우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 가능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			동의

	2. 본 동의서의 효력은 각 동의의 관련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사항 ※ (예시) 입안 제안 동의서 제출 후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전 철회한 경우, 입안 제안에 대한 동의까지는 인정됨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사항 -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구청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청장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구청장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제안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자필로 동의를 기재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토지등소유자(성 명) :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다만, 법인이나 장기간 국외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할 수 있음 중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